

행정기관명

수신
(경유)
제목 법인세 환급 내용 통보

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일련 번호	납세의무자							환급 결정	구분	법인세 환급 결정 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①법인 명 (대표자)	③법인 등록번호 (모법인 등록번호)	④사업자 등록번호 (모법인 사업자 등록 번호)	⑤ 소재지 (연락 처)	⑥업종 (업태)	⑧ 세적관리				⑨ 귀속 연도	⑩ 사업 기간	⑪ 세무서 (담당 자)	⑫ 결정 일	⑬ 사유	법인세						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				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				환급세액							
															⑮ 과세 표준	⑯ 지점 유보 소득	⑰ 산출 세액	⑱ 가산 세액 (명세)	⑲ 가감계	⑳ 감면분 추가 납부 세액 (명세)	㉑ 수시 부과	㉒ 원천 납부	㉓ 과세 표준	㉔ 산출 세액	㉕ 가산세 (명세)	㉖ 가감계	㉗ 기납부 세액 수시부 과	㉘ 과세 표준	㉙ 산출 세액	㉚ 가산 세 (명세)	㉛ 가감 계	㉜ 기납 부세 액 수시 부과	㉝ 본세	㉞ 무신고 등 가산세 (명세)	㉟ 납부지 연가산 세	
총계													당초																							
1	()									()			당초																							
	()	()	()	()									경정																							
	()												차이																							
:	()									()			당초																							
	()	()	()	()									경정																							
	()												차이																							

끝.

발신기관장 직인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

검토자 (직위/직급)서명

결재권자 (직위/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 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작성방법

☐ 납세의무자란

- ②모법인명(대표자):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.
- ③법인등록번호(모법인 등록번호):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, ()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④사업자등록번호(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):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, ()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⑤소재지(연락처):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,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⑥업종(업태), ⑦종목: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(업태), 종목을 기재합니다.
- ⑧세적관리: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.

☐ ⑨귀속연도: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.☐ ⑩사업기간: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.☐ ⑪세무서, 담당자: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.☐ 환급결정란

- ⑫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, ⑬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.

☐ ⑭구분: "당초"는 "경정"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, "경정"은 결정,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.☐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(법인세란)

- ⑮과세표준: "각 사업연도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+ 선박표준이익"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⑯지점유보소득: 「법인세법」 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.
- ⑰가산세액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, 기준금액,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⑲감면분 추가납부세액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, 근거법 조항,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㉑ ~ ㉓ 기납부세액: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.

☐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(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)

- ㉔, ㉕ 가산세액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, 기준금액,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㉗, ㉘ 기납부세액: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.

☐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(환급세액란)

- ㉙본세: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.
- ㉚무신고 등 가산세: 해당 가산세 중 ㉛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, 가산세 구분, 기준금액,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
※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.